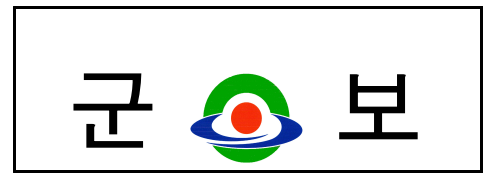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64호 2019. 4. 29.(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제2334호)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제2335호)
-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제2336호)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337호)
-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338호)
-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339호)

규 칙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54호)
-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255호)

공 고

- 분묘개장공고(2차)(예천군 공고 제2019-553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34호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대외적인 홍보강화로 군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명예군수는 예천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예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예천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예술·체육 등 예천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

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재외동포·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명예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예천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 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기타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정자문 및 읍·면행정의 자문
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예천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재직 중에 취득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천서				
성명				사진
주소				
직업 및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주요경력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

일련 번호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 명	생년 월일	공로 개요	위 촉 년월일	해 촉 년월일	사 진	연락처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35호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이소 자전거”(이하 “타이소”라 한다)란 경북도청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타이소의 무인 대여·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3. “거치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타이소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타이소 전용 시설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타이소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5. “회원”이란 타이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가입절차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 일정기간 타이소 이용 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6. “관제서버”란 타이소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이용카드”란 타이소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카드의 RF칩이 장착되어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타이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RFID카드를 말한다.
8. “타이소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타이소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이소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이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타이소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타이소 시설의 운영과 수익 및 임대 관리
4. 센터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타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4조(이용대상) 타이소 이용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이용승인) ① 타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권(1일권)을 구입하고 「타이소 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 유형별 가입비 및 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타이소 운영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이소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타이소를 대여 받을 수 있다.

③ 타이소 1회 대여 시 기본이용시간은 대여 받은 후 3시간으로 하고, 운영시간 내에는 재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이용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요금은 30분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타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타이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예천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2. 타이소 및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3. 타이소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타이소 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이소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운영) ① 군수는 타이소 및 시설물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타이소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타이소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타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이소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9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타이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36호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예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 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군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증권 및 약관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 등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37호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증명발급수수료(수가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일반진단서	1통당	5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2. 특별진단서	〃	2,000원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	5,000원	
4. 근로자 건강진단서	〃	500원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원	
7. 사망진단서	〃	500원	
8.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름	
9. 수질검사시험성적진단서	〃	500원	
10. 발급증명서 재발급	〃	300원	
11. 각종증명서 1통 초과발급	〃	100원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38호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북리 464-1번지”를 “양궁장길 36-82”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또는 장비를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를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제목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필요한 때에는 예천군이 출연한 공익법인, 관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치) 예천군골프연습장 (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청북 리 464-1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 ----- 양궁장길 36-82-----.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군수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 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천 군이 출연한 공익법인, 관내 경 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탁) ① ----- ----- -----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 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한다. ③ (생략)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수탁자 선정 방법, 위탁료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따른다. <삭제>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339호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곤충바이오생태원”을 “곤충생태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곤충바이오생태원(이하 “곤충생태원”이라 한다)”을 “곤충생태원”으로, “고향리”를 “고향리”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곤충멀티체험관
4. 야외생태원
5. 놀이공원
6. 모노레일 등

제5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탑승료”란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이용요금”이란 관람료와 탑승료를 총칭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제6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따른공휴일”을 “따른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노레일 운행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요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 ① 곤충생태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노레일을 탑승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탑승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사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무료관람)”을 “(무료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1~3급 장애인”을 “1~3급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받는 국가유공자”를 “받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1~3급 해당자는 보호자 1인 포함)”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자녀 가족

제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모하기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기타 전시물 또는”을 “군수가 기타 전시물이나”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고성, 난무 등”을 “고성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을 “더럽히거나 손상하였을 때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곤충생태원 관람료

구 분	관람료		
	일 반	아동·청소년	예천군민 50% 할인
보 통 권	5,000원	4,000원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단체, 만65세 이상인 사람, 군인, 장애인, 동절기(11월~2월)

모노레일 탑승료

구 분	탑승료	
	일 반	아동·청소년
보 통 권	5,000원	4,000원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단체, 만65세 이상인 사람, 군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족,
예천군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u>	<u>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u>곤충 바이오생태원</u>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곤충 생태원</u> ----- ----- --.
제2조(위치) 예천군 <u>곤충바이오생 태원</u> (이하 " <u>곤충생태원</u> "이라 한 다)은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u>고향리</u> 577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 <u>곤충생태원</u> ----- ----- ----- <u>고</u> <u>향리</u> -----.
제4조(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곤충생태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설의 종류) -----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u>곤충멀티체험관</u>
3. <u>곤충생태원 등</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3. (현행 제2호와 같음) <u><삭 제></u>
	4. <u>야외생태원</u>
	5. <u>놀이공원</u>
	6. <u>모노레일 등</u>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 ----- -----.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곤충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할 수 있다. <u><신설></u>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u>따른공휴일</u>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7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곤충생태원의 관람 및 대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u><신설></u> ②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탑승료</u>”란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u>이용요금</u>”이란 관람료와 탑승료를 총칭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 ----- ----- ----- -----.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 ----- <u>따른 공휴일</u>----- -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대표시간)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모노레일 운행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

<u>제8조(관람료)</u> 곤충생태원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u>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보통권과 할인권으로 구분한다.</u> <u><신 설></u> <u>제9조(무료관람)</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u>1~3급 장애인</u>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u>국가유공자</u> 4. 5. (생 략) <u><신 설></u>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u>자</u>	<u>제8조(이용요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u> ① 곤충생태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u>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노레일을 탑승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탑승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u>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사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u>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u> <u>제9조(무료이용) ①</u> ----- ----- ----- -----. 1. (현행과 같음) 2.----- <u>1~3급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u> 3.----- ----- 받는 <u>국가유공자(상이군경 1~3급 해당자는 보호자 1인 포함)</u> 4. 5. (현행과 같음) 6. <u>다자녀 가족</u> 7. ----- -- <u>사람</u>
--	---

<u><신 설></u> 제11조(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곤충생태원 관람자의 편의를 <u>도모하기 위하여</u> 곤충생태원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2조(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2. (생 략) 3. <u>기타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곤충생태원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u> 1.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u> 2.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제11조(편의시설 운영) ----- ----- 위해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 ----- -----. 1. 2. (현행과 같음) 3. <u>군수가 기타 전시물이나 -----</u> ----- - <u>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u> 제13조(행위의 제한) ----- ----- ----- -----.
--	---

1. ~ 3. (생 략) 4. <u>고성, 난무 등</u>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 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u>파 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u>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u>고성 또는 소란행위 등</u> ----- ----- 제14조(손해배상) ----- ----- 더 <u>럽히거나 손상하였을 때는</u>----- ----- -----.
--	--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54호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유형별 가입비 및 이용요금) ① 「예천군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회원 유형별 가입비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이용요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원 유형별 가입비

구 분	회 원 제			비 고
	연 회원	반기 회원	월 회원	
가 입 비	30,000원	18,000원	5,000원	
이용일수	연 중	180일	30일	

[별표 2] 이용요금

이 용 료	회 원	비회원(1일권)
기본요금 (대여 후 3시간 까지)	무 료	1,000원
추가요금 (대여 후 3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55호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운영협약) ①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관리·운영협약)①--- 제12조 제3항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공 사 명	위 치				기수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대제-관현간도로 확포장공사(11차)	예천	감천	천향	산132-1	1	

2. 개장사유 : 예천군 도로공사 구간 내 편입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69

사단법인 안동추모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 개장 후 10년

6. 공고기간 : 2019. 4. 29. ~ 2019. 6. 09. (40일간)

7. 신고 및 문의처 : 예천군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4-650-6334)

8. 신고시 구비서류

가.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족보, 가첩 등

9. 기 타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공사 중 추가 발견 분묘 포함)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예 천 군

